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권광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
O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시·도별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「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」에 「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지지 준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자 함

※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'19. 4. 12.)

4. 주요내용

○ 제12조(경비부담 및 집행) 제4항 신설

5. 검토의견

-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는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4개 권역(충북, 충남, 대전, 세종) 관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·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를 한 것임.
- O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

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을 예산항목에 포함하고 산출근거 없는 포괄적인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실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부담금을 산정할 것을 충북 뿐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음.(19. 4. 2)

- O 이번 일부개정 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'경비부담 및 집행'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- O 공동 사업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 단되며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1부. 끝.